

외부공지용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신청 안내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 융 지 원 실

I. 개 요

□ **사업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 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신청대상**

- 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로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 >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 ① 공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 ②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 * 상시근로자 수가 연평균 5인 미만, 주된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일 경우 10인 미만
 -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 ④ 위 ①~ ③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내 조합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사업자로 아래 사회적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신청대상 기준 >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 ①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사업자 (예비마을기업 제외)
-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사업자

* 세부기준은 [붙임2] ~ [붙임4] 참고

※ 신청가능 자격(공통)

- 개인기업은 실제경영자*를 주채무자로 운용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경영자를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로 등재한 후 주채무자로 운용)

- * “실제경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 또는 간부사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
 2. 직위(사장, 전무, 상무 등), 명칭, 출자지분율 등에 불구하고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 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실제경영자)을 정하여 대출 신청
(단,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신청불가(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하나의 인증을 받은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선택하여 대출 신청
(* 예시 :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으로 각각 신청 불가)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 단, 다음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1.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2. 공해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3. 임차공장(사업장) 건물에 부속된 설비*(구축물, 냉동창고 등)와 건물에 부착·매설된 공통설비(전기·수변전·공조설비 등) 등 시설형태가 건물과 분리하기 어려운 시설 <단, 자가공장(사업장)인 경우 지원 가능>
 - * 건물에 부속된 설비에 있는 범용성있는 기계(발전기, 변압기 등)는 지원 가능
 - * 자가공장(사업장) 내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화장실 등) 설치자금은 지원 가능
4. 이동성이 심하고 사후관리가 곤란하여 주담보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 기구, 차량, 중장비, 건설기계 등
5. 기계노후 등으로 환가가치가 희박하거나 소액인 소모성 기계
6. 신규 기계설비 도입없이 금형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와 수입 및 중고 금형
7. 그 밖에 담보로 취득하더라도 환가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
8.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정평가의뢰를 반려한 시설
 - 가. 공부(계약서)와 실제의 현격한 차이로 감정평가 목적물의 동일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
 - 나. 공법상 제한사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담보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리스기계 및 제3자 담보제공 시설
10. 설치후, 감정평가 및 기성고확인시 운휴중인 기계시설

※ 금형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원

- ① 생산성 및 품질향상, 제품개발, 디자인 개선 및 개발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도입하는 기계설비와 관련하여, 전문금형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금형 비용. 단, 중고 및 수입금형 구입자금은 지원 제외.
- ② 금형 제작비용이 단위 품목당 5백만원 이상이고 전체 금형 제작금액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 대출신청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와 기계

설치비용(전기승압공사, 배관공사 등)은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 ※ 공장건축, 주문제작기계 구입 등 기성고에 따라 대출금을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는 취급이 불가하며, 완공후 일시지급하는 경우에만 가능
- ※ 신청기업의 사업장에 생산설비(기계) 설치 후 감정 및 기성고 확인을 통해 생산 설비 공급업체에게 대출금을 일시지급 함
- ※ 시설자금대출로 취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당 공단에 1순위로 담보(양도담보 또는 공장근저당) 제공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용자조건

○ (대출금리)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

○ (대출기간)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기계·설비구입자금 8년 이내

구분	상환기간 5년(60개월)	상환기간 8년(96개월)
선택가능 거치기간	▪ 비거치 ▪ 1년(12개월) ▪ 2년(24개월)	▪ 비거치 ▪ 1년(12개월) ▪ 2년(24개월) ▪ 3년(36개월)

<대출기간 적용 예시>

- 운전자금 : ① 비거치 5년 분할상환 ②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③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시설자금 : ① 비거치 8년 분할상환 ② 1년거치 7년 분할상환
 ③ 2년거치 6년 분할상환 ④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0.2%p 적용

자율상환제

- 원금분할상환을 매월 지정된 날에 납부하지 않고, 약정된 연간 상환금액을 자금사정이 좋은 시기에 자율적으로 수시상환.
단, 대출이자는 매 월 마다 상환
- 매년 원금균등분할상환시 10원 미만 금액에 대하여 마지막 상환시에 상환
-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시마다 상환용 가상계좌를 통해 납입
- (예시) 대출금액 50백만원, 대출기간 2년거치 3년상환

구 분	1년 ~ 3년차	4년차	5년차
원금 상환비율	1/3	1/3	1/3
원금 상환금액	16,666,660원	16,666,660원	16,666,680원

- 약정된 연간 상환원금(1 / 총 원금분할횟수)을 대출일로 부터 3년 동안, 4년 차 동안, 5년차 동안 수시로 자유롭게 상환
- 대출이자는 월별 납입기일에 매달마다 상환

※ 대출기간 중에 분할상환방법 및 거치기간 변경은 불가하오니, 현금흐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대출한도)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 대출한도 운영방법

- ① 연간 한도 : 대출금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기업당 연간 대출가능 한도 부여하고 당해연도에 실행된 동일자금 대출잔액은 한도에서 차감
☞(예) '18년5월 운전자금 1억원 대출. '19년4월 운전자금 1억원 대출 후 '19년 11월 운전자금 1억원 추가대출 신청 가능 (6개월 이내 재신청은 불가)
- ②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10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③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 ④ “업체당 대출금액” 산출

업체당 대출금액은 기업평가등급(사업성평가+신용위험평가), 매출액, 기대출금액(타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산출하므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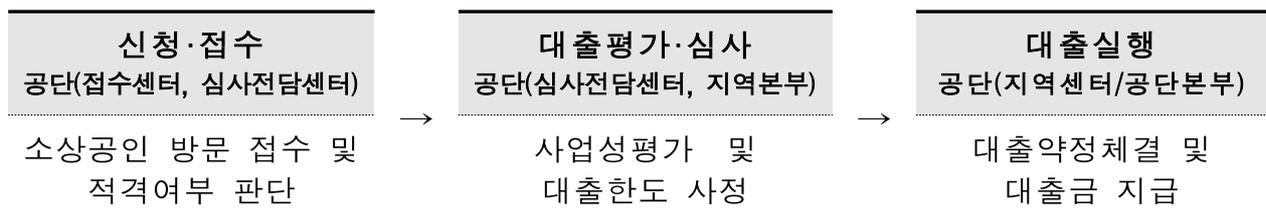
□ **평가우대**

- (가점부여) 고용창출 · 수출 ·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수상실적, 청년 · 여성 · 장애인이 조합원의 50% 이상인 협동조합과 청년 · 여성 · 장애인 근로자가 50% 이상인 사회적 · 마을 · 자활기업은 기업평가 시 우대

□ **용자절차**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용자대상을 결정하여 직접대출(신용대출)

< 직접대출 용자절차 >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접수시기**

- 2021년 4월 26일(월) 9시 ~ 2021년 4월 30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신청·접수**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구분	접수방식
운전자금 신청	온라인 접수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시설자금 동시 신청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 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사전예약 ('21년 4월 23일 ~ 4월 29일)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사전예약 → 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단, 법인기업은 모든 자금에 대해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함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biz.or.kr/>) 를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 또는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붙임1]에서만 접수

※ 주된 사업장 결정기준

주된 사업장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함

1. 제조업

- 가. 법인기업 : 공장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공장

2. 그 밖의 업종

- 가.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사무소

3. 주된 사업장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판단

- 가. 같은 기업이 수개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의 주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 나. 같은 업종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 설비정도를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되, 설비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출액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함
- 다. 자가사업장과 임차사업장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자가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다만, 임차사업장의 설비정도가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임차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 라. 공부상의 사업장과 실제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 대출신청시 유의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대출신청기업이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용자청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수령을 사유로 접근하는 불법브로커는 공단 지역본부·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사례
 1. 정책자금 지원결정 조건으로 결정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신청기업과 제3자가 계약을 한 경우
 2. 제3자가 보수를 받고 기업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시 동행하여 사업에 대해 언급하는 등 기업 실태조사 등 평가에 관여하는 경우
 3.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4. 제3자가 평가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5. 정책자금 대출 관련 업무대행 및 컨설팅 등의 대가(수수료)로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6. 재무제표 분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7.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8.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등

-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제출서류 작성방법 예시 공시 및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분야별 비즈니스지원단이 무료로 전문가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기 타

- 대출금을 용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업체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사업성평가와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므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 대출신청인(실제경영자 포함) 이외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 양식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II. 대출제한대상

- 채무자(조합, 법인포함),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협동조합 이사장,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보증인, 실제경영자가 다음 제1호 내지 제14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취급 제한

◇ 대출제한대상 기준	
1. 세금체납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단, 징수유예의 경우 신청가능, 체납처분유예의 경우 신청불가)
2.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3.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 등이 현재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자가(임차)사업장 권리침해	- 자가(임차)사업장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권리침해사실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가사업장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사업장에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있는 경우 <p>※ 자가사업장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사업장 : 주된 사업장을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보증인, 대출신청 법인이 소유한 경우 </div>

◇ 대출제한대상 기준

5.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6.	휴·폐업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7.	한계기업	<p>-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대출신청일 현재 다음 “한계기업 기준”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한계기업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한 기업 2.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 미만인 기업 <p>단, 제2호 및 3호는 복식부기 작성대상 기업에만 적용하며, 정부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 처리한 기업은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div>
8.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p>- 신청기업이 다음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연도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 신청불가 기간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단 직접대출 심사·평가 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부결)된 경우 < 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당기(직전 회계연도) 결산을 확정하고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를 제출하는 등 대출부결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2. 공단 직접대출 승인통보 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실효)하는 경우 < 대출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3.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 대출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시설자금을 지원 받은 또는 받으려는 경우와 기 지원받은 대출금 전액을 조기(중도)상환한 경우에는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div>

◇ 대출제한대상 기준		
9.	사회적 물의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10.	부채비율 700% 초과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 잠식업체 포함) * 단, 업력 5년 미만 업체는 적용 제외 * 부채비율 700% 초과이지만 제11호의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고, 전년대비 최근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기업은 신청 가능
11.	매출액초과차입금	- 대출신청일 기준 총 차입금(시설자금, 주택구입자금대출 등은 제외)이 당기 표준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상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 단, 업력 5년 미만 업체는 적용 제외
12.	성공불용자 고의실패 판정업체	- 성공불용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1.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 2. 법인기업의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13.	공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공동사업' 관련하여제재조치를 받은 협동조합	- 공단의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관련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협동조합 (경고조치 받은 협동조합 적용제외) 1. 사업비 환수, 협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연도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협동조합 2. 사업참여 제한 조치 중인 협동조합
14.	법인 실제경영자 부적정 (법인대출만해당)	- (법인대출) 실제경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공동)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최대주주

III. 제출서류

- 대출신청 서류(대출신청인(실제경영자 포함) 이외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
- 대출신청 서류
 - 공통서류

분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개수
대출신청 작성서류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신청 자가진단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온라인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각1부
	<사회적경제기업-조합, 법인, 개인기업>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협동조합 이사장,개인기업(공동)대표자,법인(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대표자 실명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여권은 여타 실명확인증표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1부
사업자 등록 및 업종확인	<사회적경제기업-조합, 법인,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1개월 이내 발급)	택1부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원칙)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2)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3)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인필) 확인서류 -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1부

	<p><사회적경제기업-조합, 법인, 개인기업></p> <p>-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제출 2. 전대차 임차사업장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임대인 동의사실 기입 및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별도 임대인 전대차동의서 징구 3.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4.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제출 <p>(예 :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과 무상임차로 사용하는 경우 등)</p> </div>		
매출 증빙	<p><사회적경제기업-조합, 법인, 개인기업(복식부기대상자)></p> <p>-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업력 3년 미만 업체는 제출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p> </div> <p><대체서류 - 개인 면세사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p><대체서류 - 개인 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p><조합, 법인, 개인기업 과세사업자></p> <p>-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2. 과세표준증명은 과세기간을 분기별로 구분하여 발급 </div> <p><조합, 법인 면세사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 직인날인, 본인 서명</p> </div>	택1 (1개월 이내)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2. 과세표준증명은 과세기간을 분기별로 구분하여 발급 </div> <p><조합, 법인 면세사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 직인날인, 본인 서명</p> </div>	택1 (1개월 이내)	
공통 (사회적 경제 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확인	<p>-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 인증서(지정서) 사본</p> <p>- 마을기업 : 인증서(지정서) 사본</p> <p>- 자활기업 : 인정서(지정서) 사본</p>	택1
공통 (조합, 법인)	조합, 법인	<p>- 조합(법인) 인감증명서</p> <p>- 조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출(발급)용”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div>	각1부 (1개월 이내)
		<p>- 조합(법인) 정관(또는 규약) 사본</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p> </div>	1부
		<p>- 조합(법인) 이사회(또는 총회) 의사록</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건 대출신청에 대한 결의사항 필수 포함 2.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div>	1부
		<p>-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장4대보험완납증명원</p>	1부 (1개월 이내)

○ 추가 서류

대분류	세분류	서류명	개수
추가	법인 연대보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제출(발급)용”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1부 (1개월 이내)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주주명부 사본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각1부
	시설 자금대출	- 법인 이사회입보결의서 <공통> - [작성] 시설투자계획서 신청기업 자체양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시설투자계획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함	1부
		<기계시설(중고기계 포함)> - 견적서(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등(카탈로그, 기계사양서 등) - 자체제작인 경우 : 제작비내역서, 설계도면 사본 등	해당 서류 각1부
추가 (가점 부여 해당 업체)	수출실적 증빙	- (직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협회) - (간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 (발행은행, KTNET)	택1 (1개월 이내)
	고용증가 증빙	- 최근 1개월 이내(대출신청 전월말)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택1 (1개월 이내)
	공제가입 증빙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내역 확인서(증명서)	1부 (1개월 이내)
	수상실적	- 대통령 및 장관급 표창, 사회적경제기업 관련기관에서 주최하는 박람회, 경진대회 등 수상 실적 사본	각1부
	협동조합 조합원 구성현황 및 증가	- 조합원 명단 1. 청년(만39세 이하)·여성·장애인 조합원이 총 조합원의 50% 이상인 경우 또는 조합원·출자금이 증가한 협동조합 제출 2. 대출신청일과 대출신청일 1년전 기준으로 각각 작성 3. 원본확인 조합인감 날인	1부
사회적·마 을·자활기 업 상시 근로자 구 성 및 취약 계층 고용	- 상시근로자 명단 1. 청년(만39세 이하)·여성·장애인 근로자가 총 근로자의 50% 이상인 경우 또는 취약계층 근로자가 근무 중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자활기업 제출 2. 대출신청일 전월 기준으로 작성 3. 원본확인 법인·조합인감 날인	1부	

□ 현장평가 서류

분류	서류명	개수
기타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등)의 등록원부 등 - 인증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확인서 등 • ISO, HACCP 인증 등 - 수상실적 - 자격증 등 	해당 서류 각1부

※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대출신청 시 아래의 서류는 온라인 상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가능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

IV.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357)

< 지원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강원지역본부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03150)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종로구,용산구,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05039)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중랑구,광진구,강동구, 송파구,성동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17 (02)839-8730	(0727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3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양천구,구로구, 영등포구,금천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0664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훈민타워 4층	강남구,서초구,동작구,관악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01157)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강북구,성북구,노원구, 도봉구,동대문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춘천시,홍천군,양구군, 화천군,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25475)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한상공회외소 3층	강릉시,평창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26336)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호	원주시,횡성군,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1층	삼척시,동해시,태백시,정선군
	(강원)속초센터	(033)638-1950 (033)638-1951	(24826)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제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48931)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구,영도구,서구,사하구,동구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46548)부산광역시 북구 기찰로12 이수타워 9층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47596)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부산진구,연제구,동래구,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48255)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남구,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울산)울산센터	(052)260-6388 (052)260-2472	(44689)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중구,남구,북구,동구,울주군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51523)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 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마산시,진해시), 창녕군,합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사천시,산청군, 의령군,남해군,하동군, 거창군,함양군,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53016)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거제시,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055)367-7116	(50623)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양산시,밀양시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대구경북 지역본부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41931)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 (053)628-4314 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서구,중구,남구,수성구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41593)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7길 14 (053)341-3900 리치프라자 2층	북구,동구
	(대구)서부센터	(053)639-3404 (42760)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5길 8 (053)639-3411 595b 4층	달서구,달성군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36700)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661 백암 (054)854-3284 빌딩 6층	안동시,상주시,의성군, 청송군,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39253)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054)475-5681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김천시,상주군, 칠곡군,고령군,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37783)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054)231-4364 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38138)경상북도 경주시 북문로 125-5 (054)776-8346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경주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
	(경북)영주센터	(054)634-6975 (36099)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182 (054)634-6980 영주상공회의소 1층	영주시,문경시,봉화군,예천군
광주호남 지역본부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61925)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062)366-2136 KDB생명빌딩 21층	서구,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62243)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062)954-2085 177 광주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61170)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 (062)525-2726 동광주빌딩 2층	동구,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061)285-6349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목포시,무안군,해남군, 강진군,영암군,장흥군, 신안군,완도군,진도군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58011)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061)741-4159 109 5층	순천시,광양시,구례군, 보성군,고흥군,곡성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59631)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061)665-3607 여수상공회의소 3층	여수시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58217)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85 (061)332-5309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화순군,함평군, 영광군, 장성군,담양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064)751-2103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도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54969)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063)231-8112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주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54620)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87 (063)853-4413 상공회의소 3층	익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56160)전라북도 정읍시 중앙로 72 (063)533-1783 기업은행 3층	정읍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55762)전라북도 남원시 향단로 83 (063)626-0372 KT빌딩 1층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54027)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124 (063)445-6316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경기 인천 지역본부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16705)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용인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031)666-0270	(17894)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평택시,안성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18455)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동탄스카이뷰빌딩 503호	화성시,오산시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14248)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광명시,시흥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1)707-7345	(1359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광주시,이천시,여주시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11674)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의정부시,동두천시,포천시, 양주시,연천군,가평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14611)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층	부천시,김포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10414)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파주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14066)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지점 3층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15357)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 1층	안산시
	(경기)하남센터	(031)794-4383 (031)794-4390	(12919)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하남시,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
	대전 충청 지역본부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22227)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21360)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5층	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34111)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2호	유성구,서구,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34903)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동양생명빌딩 1층	중구,동구
(세종)세종센터		(044)868-4524 (044)868-4527	(30151)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층 303호	세종시
(충남)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041)567-5308	(31169)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천안시,아산시,예산군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32546)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보령시,청양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32974)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 문경빌딩 3층(구 황산빌딩)	논산시,계룡시,부여군, 서천군,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31982)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2청사 1동 3층	서산시,태안시,당진시,홍성군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28388)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 번길 37 신한은행 3층	청주시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27339)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충주시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27184)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문화회관 2층	제천시,단양군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27738)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 길3 미르타워 3층	음성군,괴산군,증평군,진천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29040)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옥천읍사무소 3층	옥천군,보은군,영동군

[붙임1] 심사전담센터

지역본부	심사전담센터	전화번호	관할 접수센터
서울강원지역본부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
	서울서부센터	(02)839-8317	-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
	춘천센터	(033)243-1950	-
	원주센터	(033)746-1950	-
	강릉센터	(033)645-1950	-
	삼척센터	(033)575-1950	-
	속초센터	(033)638-1950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
	울산센터	(052)260-6388	-
	창원센터	(055)275-3261	-
	김해센터	(055)323-4960	양산
	진주센터	(055)758-6701	통영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
	대구서부센터	(053)639-3404	-
	구미센터	(054)475-5682	-
	포항센터	(054)231-4363	-
	경주센터	(054)776-8343	-
	안동센터	(054)854-3281	영주
경기인천지역본부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
	부천센터	(032)655-0381	-
	수원센터	(031)244-5161	-
	평택센터	(031)666-0260	-
	안산센터	(031)482-2590	-
	화성센터	(031)8015-5301	-
	안양센터	(031)383-1002	-
	의정부센터	(031)876-4384	-
	성남센터	(031)705-7341	-
	고양센터	(031)925-4266	-
	광명센터	(02)2066-6348	-
하남센터	(031)794-4383	-	
광주호남지역본부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
	제주센터	(064)751-2101	-
	여수센터	(061)665-3600	-
	정읍센터	(063)533-1781	-
	순천센터	(061)741-4153	-
	목포센터	(061)285-6347	-
	나주센터	(061)332-5302	-
	전주센터	(063)231-8110	남원
군산센터	(063)445-6317	익산	
대전충청지역본부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대전남부, 논산, 공주, 세종
	청주센터	(043)234-1095	충주, 제천, 음성, 옥천
	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서산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소상공인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① 중 소상공인^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③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②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③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②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①~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①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②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③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④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⑤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붙임2-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업종구분 방법

□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업태)에 없는 경우,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 ①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 ②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 ③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표준산업분류	업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